시약 및 초자류 등 구매계약 유의서

제1조 (목적)

이 유의서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에서 IGRA 검사지원 등에 사용되는 진단시약류 등의 구입에 관한 공통사항으로서 납품업체(이하 “계약상대자”라 한다)의 납품 상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계약기간)

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0일까지로 한다.

제3조 (계약자의 자격)

1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, 실험검사용 시약 또는 재료를 취급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며. 법인등기부상 본점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)을 경상북도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한다.
2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9조의 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3에 의한 **시약판매업(G2B업종코드 7468)**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.
3. 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한 **의료기기판매업(G2B업종코드 5312) 또는** 약사법 제45조 **의약품판매업(의약도매상)(G2B업종코드 5307)**로 등록한 업체 또는 이어야 한다.
4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**소기업** 또는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**소상공인**으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**소기업.소상공인 확인서(공공구매 종합정보(www.smpp.go.kr) 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함)를 소지한 업체**이어야 합니다.

 ※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.

제4조 (납품조건)

1.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 **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물품을 납품**하여야 한다.
2.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연구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물품의 규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, 물품의 규격은 물품내역서(규격서)상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의 규격품이어야 하고, 물품이 단종되어 동일 물품으로 납품할 수 없을 시에는 규격의 호환성이 있고 성능이 동등 이상의 제품임을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.
3.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은 잔여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.
 (단, 출고 시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제품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제품)

4. 시약 납품 시 냉장 또는 냉동 등 보관에 유의하여 제품의 성능저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보관상태가 불량하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 (지연배상금)

1. 계약상대자가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할 경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의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경과일수 매 1일당 미납물품대금의 1000분의 0.8 상당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연구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2. 연구원은 계약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지연배상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.

제6조 (기　타)

1.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.
2. 유의서에 대한 해석이 연구원과 계약대상자가 다를 경우, 연구원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,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.